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-56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
「표준형 무인 우편·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」를 다음과
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5일

우정사업본부장

표준형 무인 우편·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

1. 서비스개요

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등 낮시간에 우편물 직접 수령이 어려운 고객의
증가에 따라 표준형 무인 우편·택배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우편물
배달 시 고객이 부재중인 경우 무인 우편·택배함에 보관·교부하여,
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하는 서비스

2. 시험적 실시 기간 : '17. 6. 16.(금) ~ '17. 8. 8.(화)

* 시험적 실시기간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

3. 실시방법

가. 서비스 대상 :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『표준형 무인 우편·
택배함 서비스 시범운영』에 참여한 업체의 무인 우편·택배 보
관함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배달하는 등기 우편물

*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-16호 「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」에 따른 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으며, 타 택배회사 소포의 배달은 제한하지 않는다.

나. 보관 및 반송 방법

- 1) 배달 시 고객이 부재중인 경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고, 공동주택 내 표준형 무인 우편·택배보관함에 보관
- 2)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(SMS, Push 등)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관 사실 알림
- 3) 보관한 날로부터 2일간 무인 우편·택배보관함에 보관하며, 수취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집배원이 수거하여 반송 처리

D일(보관)	D+1일	D+2일	D+3일	D+4일
무인우편물보관함 투함	무인우편물보관함 보관중	무인우편물보관함 보관중	집배원 수거 (우체국 보관)	반송

* 공휴일(일요일 포함)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, 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보관일수(2일)에 미산입한다.
(보관기간 마감일이 토·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보관)

다. 수령(교부) 방법

- 1) 무인 우편·택배함에서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 수령
- 2) 우편물 수령 시 수령인의 성명, 수취인과의 관계 입력

* 수령인이 무인 우편·택배함에서 우편물을 가져갔을 때, 배달완료된 것으로 본다

부 칙

이 공고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